

서울특별시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안

제안설명

기획경제위원회 이민옥 의원

존경하는 김경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동구 제3선거구 출신 기획경제위원회 이민옥 의원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작은도서관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5년 8월 「작은도서관 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지원 책무가 강화되었으나, 서울시의 관련 조례는 아직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지역별 작은도서관 운영 체계와 지원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시민들의 지식정보 접근성 격차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작은도서관은 단순히 도서를 대출하고 열람하는 기능을 넘어서, 지역주민의 문화진흥과 공동체 문화 조성의 거점으로 발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작은도서관의 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서울시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의무화
2. 작은도서관의 기능을 도서관자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지역문화 진흥, 독서문화 향상, 공동체 문화 강화 등으로 확대
3. 작은도서관 조성·운영,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4. 작은도서관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또는 지원
5. 작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정보공유시스템 운영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 의무화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작은도서관을 통해 시민들에게 생활 친화적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독서문화와 공동체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잘 살피 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